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우리군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군에서 일부 지원하여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노후 공동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용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 현행조례가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성주군공동주택 지원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적용범위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지원범위 : (현행)소요사업비의 50%이하
(개정)소요사업비의 60%이하, 3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서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
- 상 ·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 담장의 유지보수(담장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
- 자전거보관대, 쓰레기수집 및 처리시설의 개량 및 보수
-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 절개지등의 보수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시설

다.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6조)

○ 지원신청, 지원절차, 지원금 교부 및 정산방법 규정

라.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안 제7조)

○ 지원금의 사용목적과 교부중지 및 반환조건 규정

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9조～제12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사.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제18조)

○ 분쟁조정 싱청과 절차, 분쟁조정 방법, 비용부담 등 규정

4.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제16조 제1항, 제43조 제8항, 제52조,「주택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제67조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우리군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공동주택단지로서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군에서 일부 지원하여도 자부담능력이 부족하여 노후 공동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비용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 현행조례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본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에 있어 자치입법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